

수원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20459(본소), 2022나18(반소)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20459(본소), 2022나18(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16 선고 2019가합103138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1. C

2.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배정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E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완

변론 종결2022. 5. 13.

판결 선고2022. 6. 17.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16. 선고 2019가합103138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들(본소)

1)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각 131,620,7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8.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부동산'란 기재 제2, 3, 8 내지 13 부동산(이하 부동산 전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12의 지분에 관하여 2019. 7. 14.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반소)

피고에게, 원고 C는 12,906,819원, 원고 D는 32,906,81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지분을 초과하여 이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이 사건 제2, 3, 8 내지 13 부동산 중 118,713,9521) / 1,784,567,435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에게 이 사건 제2, 3, 8 내지 13 부동산 중 98,713,9522) / 1,784,567,435의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7. 14.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공동원고 A, B(이하 'A', 'B'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동일하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는데, A, B과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A, B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A(장녀), 피고(장남), B(차녀), AC(이남) 및 원고 C(삼녀), D(사녀)는 F의 자녀이다. F은 2018. 8. 15. 사망하였다(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유증

망인은 2006.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 1) 이 사건 제5 부동산은 2017. 12. 7.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날 당진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 이 사건 제1, 4 부동산은 2018. 8.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2019. 10. 21. H에게, 이 사건 제4 부동산은 2019. 5. 27. I, J에게 각 매각되었는데, 피고는 2019. 11. 14. 망인의 상속인 겸 유증자의 지위에서 205,118,173원을 배당받았다(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 3) K은 2018. 8. 28. 이 사건 제6, 7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8. 8. 28. 접수 제37928호로 2018.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4)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9. 2. 26. 접수 제7380호로 이 사건 제2, 3, 8 내지 13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 사망 당시 재산 현황

망인 사망 당시 이 사건 제2, 3, 8 내지 13 부동산의 가액 및 망인의 예금 등의 채권 현황은 별지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2 내지 15호증, 을 제2, 3,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심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축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했고,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12이다.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상속개시시인 망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망인의 적극재산은 1,784,567,435원(= 별지 표 '총계'란 1,579,449,262원 + 피고가 이 사건 제1, 4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받은 배당금 205,118,173원)이므로, 원고들의 유류분액은 각 148,713,952원(= 1,784,567,435원 × 1/12)이다. 상속개시 이후 이 사건 제1, 4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므로, 피고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제1, 4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 205,118,173원 중 자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7,093,181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1,620,771원(= 148,713,952원 - 17,093,18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제1, 4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하여 가액반환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 3, 8 내지 13 부동산에 관하여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7. 14.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784,567,435원

(1) 부동산 및 예금 등 채권

상속개시 당시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가액 및 예금 등의 채권액이 1,784,567,435원(= 별지 표 '총계'란 1,579,449,262원 + 피고가 이 사건 제1, 4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받은 배당금 205,118,17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상속개시 당시 망인이 M에게 부담하고 있던 4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기초재산에서 그 채무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M에 대해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자신이 장남으로서 망인을 부양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유류분액: 아래 표의 '유류분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 C	1,784,567,435	1/6	1/12	148,713,952
원고 D	1/6	1/12	148,713,952	
피고	1/6	1/12	148,713,952	

라) 특별수익액(C)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 개시 당시 피고의 특별수익액은 이 사건 유증으로 취득한

1,751,948,173원(= 1,546,830,000원 + 205,118,173원)이고, 원고들은 특별수익액이 없다.

마) 순상속분액(D)

(1) 관련 법리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참조).

한편,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간주상속재산),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킨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이 때 일부 상속인의 특별수익액이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없으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하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초과특별수익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간주상속재산: 1,784,567,435원

(나) 법정상속분액 및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의 각 법정상속분액 및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을 계산하면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C	1,784,567,435	1/6	297,427,905	0	297,427,905
원고 D	1/6	297,427,905	0	297,427,905	

원고 C	1,784,567,435	1/6	297,427,905	0	297,427,905
피고	1/6	297,427,905	1,751,948,173	-1,454,520,268	

(다) 초과특별수익자의 발생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의 수정

위와 같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피고는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피고를 상속인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위 초과특별수익을 안분하여 분담하면 그 계산 결과는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C	297,427,905	1,454,520,268	1/5	290,904,053	6,523,852
원고 D	297,427,905	290,904,053	6,523,852		

(라) 순상속분액(D)의 산정

위 (다)항의 구체적 상속분에서 상속채무 분담액을 빼면 순상속분액(D)이 되는데, 상속채무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민법 제1008조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초과특별수익자인 피고의 상속분은 인정되지 않고, 이에 따라 산정한 순상속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C	6,523,852	0	6,523,852
원고 D	6,523,852	6,523,852	
피고	0	0	

바) 원고들, 피고의 각 유류분 부족액 및 초과액[= (A × B) - C - D]

결국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유류분 부족액 또는 초과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양수는 부족액을, 음수는 초과액을 의미한다).

원고 C	148,713,952	0	6,523,852	142,190,100
원고 D	0	6,523,852	142,190,100	
피고	1,751,948,173	0	-1,603,234,221	

사) 피고의 유류분 일부 반환

(1) 원고들은 2019. 11.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4 부동산의 매각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이 사건 배당금 205,118,173원 중 자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7,093,181원(= 205,118,173원 × 유류분비율 1/12)을 각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9. 11. 14.경 이 사건 배당금 중 원고 C에게 30,000,000원을, 원고 D에게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그 중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각 17,093,181원을 초과하는 돈 역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의 일부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2019. 11. 14. 망인의 상속인 겸 유증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제1, 4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205,118,173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2019. 11. 14. 원고 C에게 30,000,000원을, 2019. 11. 15. D에게 5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갑 제19, 20, 21, 22호증, 을 제14, 15,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30,000,000원, 5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9. 11. 14.경 피고에게 그 중 각 17,093,181원을 '유류분 일부 금액'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15호증)을 작성하여 준 점, ② 피고는 같은 날 A에게도 같은 금액인 17,093,181원을 지급하였고, A로부터 위 돈이 '유류분의 일부 금액'으로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14호증)을 받은 점(B은 해외에 있어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B에게는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2019. 11. 25. AC에게 73,830,033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에 대해 AC로부터 '유류분 및 상속 일부 금액'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18호증)을 지급받은 점, ④ AC은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원고 C에 대하여 30,000,000원 상당, 원고 D에 대하여 50,000,000원 상당의 각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당심 증인 A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1, 4 부동산은 망인이 자신에게 물려준 것으로 이 사건 배당금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몫이었고,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자신이 원고들에 대해 차용금채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피고에게 이를 대신 변제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50,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피고는 A과는 달리 원고들에게 명시적으로 유류분 명목으로 지급한 17,093,181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에게만 위 17,093,181원을 초과하여 유류분 내지 상속금액을 더 지급하여야 할 사정을 찾기 어렵고, 만일 위 17,093,181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도 유류분 내지 상속 금액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면 을 제15호증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⑦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금에서 유류분 명목인 17,093,181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 중 유류분으로 지급한 금액은 각 17,093,181원이라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AC의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7,093,181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유류분의 반환을 위해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최종적인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원고 C	142,190,100	17,093,181	125,096,919
원고 D	142,190,100	17,093,181	125,096,919
피고	-1,603,234,221		

3) 유류분 반환 방법 가) 유류분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35581 판결 참조),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은 원물반환을 명함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4 부동산은 상속개시 이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으나, 이 사건 제1, 4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지분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가액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125,096,919원이고,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제2, 3, 8 내지 13 부동산의 가액이 1,546,83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이며, 이 사건 제1, 4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 3, 8 내지 13 부동산에 대한 각 125,096,919/1,546,83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7. 14.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9. 11. 14.경 이 사건 배당금에서 유류분의 반환으로 원고 C에게 30,000,000원을, 원고 D에게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그 중 각 17,093,181원만을 유류분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각 나머지 돈은 피고가 AC의 원고들에 대한 각 차용금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각 나머지 돈이 유류분의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 C는 12,906,819원(= 30,000,000원 - 17,093,181원), 원고 D는 32,906,819원(= 50,000,000원 - 17,093,181원)을 각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2의 나. 2) 라)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C에게 3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그 중 원고들이 유류분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각 17,093,181원이라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AC의 원고들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를 피고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유류분으로 지급받은 각 17,093,181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돈을 원고들이 법률상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3, 8 내지 13 부동산 중 각 131,620,771/1,784,567,435 지분(약 7.3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 중 각 125,096,919/1,546,830,000 지분(8.0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항소하지 아니한 원고들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도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현중

판사김무신

판사심연수

별지

1) 148,713,952-30,000,000

2) 148,713,952-50,000,000

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 이 수정된 상속분은 망인의 예금 등 채권 합계 32,619,262원에 대한 것이다. 즉 피고는

특별수익액이 순상속분액을 초과하므로 망인의 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는 상속분을 가지지 못한다.